의안번호	2201112
의 뢰 인	유영하의원
회 답 일	2024.08.09.
추계번호	24D1286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%를 지급(추계에서는 기 사망 참전유공자 제외)할 경우, 2026~2030년 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3,973억원(연평균 79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참전명예수당 70% 배우자 승계	279	547	805	1,052	1,290	3,973	795

주: 과거 사망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유배우자 관련 자료 부재로, 법 시행 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에서 제외하였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제8항(참전명예수당 등) 신설	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,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의 70%를 지급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6조제8항(참전명예수당 등) 신설	O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의 70%를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 발생

❑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 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참전유공자의 유족 관련 자료 부재로 과거 사망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유배우자 현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❑ 따라서, 법 시행 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에서 제외하고,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현재 무공수훈자 유배유자율을 적용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
❑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 승계(안 제6조제8항)

(1) 대상자 수

❑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23년 연말 기준 13만 2,479명이며, 최근 5년간 연평균 8.7% 감소

[표 2]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

(단위: 명, %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증감률
지급인원(명)	190,329	173,733	161,577	146,932	132,479	−8.7

자료: 국가보훈부

❑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-8.7%를 적용하여 2026~2030년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

[표 3]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추정: 2026~2030

(단위: 명, %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연평균증감률
지급인원(명)	100,955	92,212	84,227	76,933	70,270	−8.7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승계 배우자 인원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가 감소한 만큼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로 가정하고, 사망자 수에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신규 미망인 수를 추정

○ 전년도 미망인 수 누계에 배우자사망률을 적용하고 신규 미망인 수를 더하여 당해연도 미망인 수 누계를 추정

○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은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.1%, 배우자의 사망률은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.1%를 적용함

[표 4] 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수 추정: 2026~2030

(단위: 명)

배우자 승계	2026	2027	2028	2029	2030
전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	100,955	92,212	84,227	76,933	70,270
추정 사망자 수	9,572	8,743	7,986	7,294	6,662
신규 미망인 수	6,901	6,304	5,758	5,259	4,804
미망인 누계	6,901	12,646	17,379	21,231	24,314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(2) 지급단가

❑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5]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
월 지급액	300	320	340	350	390	420	7.0

자료: 국가보훈부

❑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.0%를 적용하여, 추계기간 동안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고, 개정안에 따라,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참전명예수당의 70%로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

[표 6]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: 2026~2030

(단위: 천원, %)

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연평균 증감률
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	481	515	551	590	632	7.0
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의 70%	337	361	386	413	442	7.0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(3) 추가재정소요

❑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%를 지급할 경우, 2026~2030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3,973억원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

(단위: 명, 천원,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 수	6,901	12,646	17,379	21,231	24,314	-
지급단가	337	361	386	413	442	-
추가재정소요	279	547	805	1,052	1,290	3,973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는 2025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 2026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의 70%를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2025년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과소추계되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